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201915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D

변 론 종결 2016. 8. 18.

판결 선고 2016. 9. 22.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가합52137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는 통관 알선업, 창고보관, 야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2) 피고는 2011. 4.경 A에 입사하여 직원으로서 보세창고 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왔다.
- 3)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3. 1. 24.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부동산 소유권 명의의 이전 등

- 1) 평택시 F 임야 6,232㎡ 및 위 G 전 251㎡(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한다)에 관하여, 2012. 2. 8.자 매매(이하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3. 7. 피고의 명의로 마쳐졌다. 거래가액은 위 F 임야의 경우 9억 3,000만원, 위 G 토지의 경우 3,000만 원으로 각 등기되어 있다.
- 2) 피고는 2012. 3. 7.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 9억 6,000만 원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3. 7. 근저당권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0억 7,800만 원, 채무자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 1) 원고는 2012. 5. 31.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① 신용보증원금 : 4억 원(이후 3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② 신용보증기간 : 2012. 5. 31.부터 2013. 5. 30.까지(이후 2014. 11. 28.까지로 변경되었다)

③ 신용보증종류 : 대출보증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 광화문지점장에게 보증금액 4억 원, 피보증인 A, 대출예정금액 5억 원, 보증기한 2013. 5. 30.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3) A은 2012. 5. 31. 그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는데, 2014. 10. 1. 이자액 지급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14. 12. 30. 우리은행에게 A의 채무 중 보증범위 내에서 원금 3억8,000만 원, 이자 7,052,070원 합계 387,052,0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피고가 아닌 A이 그매수자금 등을 부담한 실질적 매수인이다. A은 세금 부과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매수인이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그 과정에서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각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I, J, K, L은 선의의 매도인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따라서 피고는 A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자신이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1억 9,000만 원(= 총 매매대금 9억 6,000만 원 - 대출금 7억 7,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 다.

3.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4. 24. 선고 2007다900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7,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수산업협동조합 평택항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가) 피고는 A의 직원이었고, 그가 설립한 E는 A과 동일한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A뿐만 아니라 E의 사내이사였다.

다) 2012. 1. 30.경 A의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소지에 A의 신규보세창고를 신축할 예정이고, 이를 A의 창고부지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라) 피고가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대출받을 당시 A의 직원 M, N 및 A의 대표이사 O가 그 대출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러나 을 제3, 4, 5, 7,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의 증언,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내지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매수에 관하여 A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그 명의신탁관계를 전제로 하는 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피대위채권)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즉,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A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라고 지칭하는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A과 피고가 통모하였다거나 A의 대표자였던 B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피고에게 그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선불리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는 P로부터 보세창고 사업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여러 회에 걸쳐 투자받았고, 이를 조금씩 상환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8. 22.경 합계 2,000만 원을 A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B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지급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보세창고와 관련된 시설비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A의 직원이었으나, 직접 투자를 하거나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공동 사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제1심법원의 수산업협동조합 평택항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당시 B이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약 1억여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총 매매대금이 9억 6,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7억 7,000만 원은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되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이 송금 내지 지급된 돈 약 1억여 원을 B 내지 A이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이라 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그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된 약 1억여 원은 결국 P가 피고에게 투자한 돈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④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2012. 4. 9.부터 2013. 2. 7.까지 사이에 A이나 B, O, M, Q 등이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그때로부터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한 2014. 10. 1.까지 약 1년 8개월 사이의 대출금 이자액도 계속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었다면 누가 이를 부담하였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 당시의 등록세 · 취득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정기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찾기도 어렵다(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가 그 지방세를 납부하였다고 보일

뿐이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훈, 판사 진현민, 판사 김승주

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이 2015. 10. 8.인 이상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송달 다음날인 2015. 10. 9.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5. 10. 8.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히려 보인다.